

취보

2019년 상반기

<p>2019년 2월 1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년도 24회 겨울 학술대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아동청소년문학과 독자: 존재-인식-실천-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1부: 아동청소년문학 독자의 '존재'<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기 통계를 통해 본 어린이 독자의 존재 발표: 오현숙(서울대) ■ 1960-70년대 학생 독자의 소통 욕망과 잡지 발표: 장수경(목원대) ■ 지금, 아동청소년 출판물의 독자 구분 발표: 김민령(인하대) ■ 종합토론 : 김현숙(고려대), 고지혜(고려대), 김소영(어린이독서교실) 2부: 아동청소년문학 독자에 대한 '인식'<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독자의 경험을 반영한 문학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발표: 방은수(한국교원대) ■ 아동문학에서 '독자'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나? - '이중 독자'론을 통해 본 아동문학 독자 인식의 구조와 전망 - 발표: 조은숙(춘천교대) ■ 종합토론 : 이향근(서울교대), 김유진(인하대) ■ 특강: 어린이와 어른, 우리 창작동화로 만나다
-------------------------	---

	<p>강의: 임선복(어린이도서연구회)</p> <p>3부: 아동청소년의 독서 ‘현장과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학기 한 책 읽기’ 실천에서 성장하는 어린이 독자 발표: 이지영(경인교대) ■ ‘한 책, 한 도시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사업 발표: 오세란(청주교대) ■ 종합토론 : 이유진(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김은옥(어린이도서연구회)
<p>2019년 4월 26일</p>	<p>□ 연구발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306호 ■ 그림책에서 보이는 성장 양상 발표: 조유정(공주교대) ■ 토미 웅게리의 그림책과 시학 : <달 사람>과 폴 베를렌의 <달빛>의 상호텍스트적 이미지 관계 발표: 김시아(서울디지털대학)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라 부른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아래에서는 ‘학회’라고만 한다)는 아동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하여, 아동청소년문학의 연구를 진작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할일)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와 그 밖에 필요한 출판물을 펴낸다.
2. 학술연구발표회를 연다.
3. 학술대회를 연다.
4. 그 밖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며 회비를 내는 사람
2. 평생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결정한 평생 회비를 한목에 낸 사람
3. 특별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의 뜻을 따르며 학회를 돕는 사람
4.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지를 받아보는 도서관과 그 밖의 단체

제5조(자격) 회원은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제7조(제명)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빚으면 이사회가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총무, 연구, 편집, 출판, 섭외)와 지역이사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 명

제9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4.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회장이 유고한 동안에는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11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총무이사: 학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이사: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기획 업무를 맡는다.
3. 편집이사: 학회지 편집과 관리 업무를 맡는다.
4. 출판이사: 학회 출판물의 간행 업무를 맡는다.
5. 섭외이사: 학회 홍보와 대외 섭외 업무를 맡는다.

제12조(감사) 감사는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3.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난 임원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1. 총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해마다 2월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한다.
4.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② 회칙 개정
 - 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 ④ 그 밖에 모임의 중대한 일
5.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과 결산의 심의
 - ③ 회원 제명의 심의
 - ④ 학술대회 개최 계획 심의
3. 이사회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회 운영의 실무 기획과 집행
 - ②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에 따른 협력
 - ③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승인
 - ④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위원 추천
 - ⑤ 그 밖에 필요한 실무
3. 상임이사회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위원회

제18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①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 ②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 판정 및 집행
4.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논문 심사 및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6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① 연구 부정행위 검증과 심사 결과 보고
 - ② 심사 결과에 따른 사후 제재 조치 결정
4.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학술 활동

제20조(학술대회)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열 수 있다.

제21조(연구발표회) 소규모의 연구발표회는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열 수 있다.

제22조(연구세미나) 자료 조사 및 연구 발표를 위한 세미나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회지 간행)

1. 학회지 『아동청소년문학연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2. 학회지 간행을 위한 기획 및 편집 업무 책임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24조(출판물 간행)

1.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2. 출판물 간행을 위한 업무 책임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7장 재정

제25조(경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회비)

1.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입회비(1만원)
 - ② 연회비(전임: 3만원 이상, 비전임: 2만원, 기관회원: 5만원 이상)
 - ③ 특별회비
 - ④ 평생회비(50만원)
2. 입회비는 입회원서와 함께 납부한다.
3. 연회비는 해마다 납부한다.
4. 특별회비는 필요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둘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8장 해산

제28조 학회를 해산하려면 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전액을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회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3조(위촉)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의 1/2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의 요건

제5조(편집위원의 요건)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성(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문학교육, 미디어 등)
2.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성
3.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의 탁월성
4. 해당 학문 분야 활동의 공익성
5. 학문적 평가 안목의 공정성

제4장 편집위원회의 임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과 학회지 편집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특집 기획 등 편집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한다.

제7조(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일을 돕고, 위원장이 유고한 경우 위원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5장 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8조(소집)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통상 학회지 발간 2개월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장은 기타 필요시에 비정기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재적 편집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규정) 논문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논문 심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가 발간하는 『아동청소년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2조(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투고 논문 당 3인씩 배정한다.

제3조(요건)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자들로 위촉하되, 학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제4조(비공개 원칙)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심사 대상 및 논문 접수

제5조(심사 대상)

1.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발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접수 및 마감)

1. 소정의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2.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논문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7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된 투고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당 심사위원을 3인씩 배정하되, 투고자가 기피 신청을 했거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한 심사위원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연구 윤리 규정 서약서 양식을 보낸다.
4.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을 보낼 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연구비 지원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사 기준 항목) 심사 기준은 ‘논문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계 기여도’ 등의 다섯 항목으로 한다.

1.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참신한 것인가.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문의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3. 논리 전개 of 타당성: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명확하며, 논문의 구성과 전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 자료의 적절성: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적절한가.
5. 학계 기여도: 논문의 결과가 학계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제9조(등급 판정)

1.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판정하여 이를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다.
2. 심사위원은 등급 판정의 이유를 ‘심사소견’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게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정했을 경우에도 심사 총평을 ‘심사소견’란에 명시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심사소견’란에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가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정했을 경우, '심사조건'란에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5장 게재 관련 규정

제10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평가를 종합하여 '게재 가', '반려' 중 하나로 판정한 뒤,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 1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①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을 ②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4.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능', 2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③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5. 심사위원 3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④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6.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가능', 1인이 '수정 후 게재',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 ⑤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7. 종합 판정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심사 요지를 전달하고 소정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8. 종합 판정이 '반려'로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통고한다.
9. 종합 판정을 '게재 가능'으로 받은 논문의 분량이 발행 예정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는 심사위원 3인의 총점 합산이 높은 논문, 우리 학회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 최근호에 게재한 적이 없는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한다.
10. 종합 판정을 '게재 가능'으로 받았으나 발행 예정 면수 등의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 우선권을 갖는다.
11. '게재 가능'으로 결정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고 해도,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제11조(재심 신청)

1. 논문이 반려된 경우, 투고자는 반려 통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투고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 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4. 재심 위원은 투고 논문, 1차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투고자의 재심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게재 가'와 '반려' 중 하나로 판정한다.
5.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규정은 2018년 2월 3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논문의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성격)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 관련 분야(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문학교육, 미디어 등)의 제반 이론과 실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접수 방법 및 접수처)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홈페이지: <http://childlit.or.kr>

—논문투고시스템: <http://submit.dbpia.co.kr>

제4조(접수 기간 및 발행 일정) 논문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나, 투고 마감, 수록 논문 확정, 발행 일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마감	수록 논문 확정	학회지 발행
상반기	4월 30일	5월 말~6월 초	6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	11월 말~12월 초	12월 31일

제5조(논문 제출 방법)

1. 동일 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논문 투고 시 논문 파일과 함께 투고 신청서(저작권 이용 동의서 포함), 연구윤리규정 동의서, KCI 논문유사도검사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B 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게재 신청서에는 필자명, 소속,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에도 모두 밝히도록 한다.

4. 논문 파일에는 투고자의 신원과 소속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남겨서는 안 된다.
5.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6조(분량)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편집된 페이지 30면) 이내로 한다.
2.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3. 추가 게재료는 학회지 면수를 기준으로 초과된 면당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편집 형식)

1.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입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국문초록, 한글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 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4. 본문은 장과 절의 소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① 장: 1, 2, 3 ……
② 절: 1), 2), 3) ……
③ 항: (1), (2), (3) ……
5. 기타 원고 형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용지 크기: A4 (210 X 297mm)
- ② 용지 여백: 위 20mm, 아래 15mm, 왼쪽과 오른쪽 30mm, 제본 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③ 줄 간격: 160%
- ④ 글자 및 문단 모양:

본문: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신명조 혹은 바탕
논문 제목: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장·절 제목: 12포인트, 진하게, 왼쪽 정렬
인용문: 크기 9포인트, 들여 쓰기 10포인트

각주: 크기 9포인트, 내어 쓰기 15포인트
 참고문헌: 크기 9포인트, 내어 쓰기 30포인트
 영문초록: 크기 10포인트

⑤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 쓰기 10포인트

6.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하되,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① 단행본, 학술지, 문예지, 신문: 『 』
- ② 논문(학위논문 포함), 평론, 작품: 「 」
- ③ 노래, 영화 등: 〈 〉
- ④ 표 제목: [표 1]
- ⑤ 그림 제목: [그림 1]
- ⑥ 강조 사항: ‘ ’
- ⑦ 직접 인용: “ ”

제8조(각주)

1. 각주는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학회지명』 호수, 기관명, 연도, 수록 면수.
- ② 서양어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호수, 연도, 수록 페이지수.

김상욱, 「아동문학의 장르와 용어」, 『아동청소년문학연구』 4, 2009.6, 8면.
 최인학, 「동화의 특질과 발달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67, 70면.
 稻田浩一, 『日本昔話百選』, 東京: 三省堂, 1971, 60면.
 Brown, R., ‘Children’s Book Challenges: The New Wave’, *Canadian Children’s Literature* 68, 1992, pp.27~32.
 Liner, L., *A History of the Writing of Beatrix Potter*, London: Frederic Warne, 1987, p.70.

2. 저자명의 표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공동저자의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저자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 구분하고, 4인부터는 ‘○○○ 외 ○인’으로 표기한다.
- ② 서양어 문헌: 공동저자의 경우 2인일 때는 저자 사이에 ‘&’를 넣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임성규·이주형·류덕제,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2009, 60~65면.
원종찬 외 14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0면.
Fox, W. & M. Taylor, *Writing Literacy*, Amsterdam : John Benjamins, 1995, p.45.
Ritchie, G. D., G. J. Russel, A. W. Black, & S. G. Pulman, *Computational Morphology*, Cambridge, MA : MIT Press, 1992, p.100.

3. 서명의 표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논문 제목에는 낫표(ㄱ)를, 단행본 제목에는 겹낫표(ㄱ)를 사용한다.
- ② 서양어 문헌: 논문 제목에는 따옴표(‘’)를, 단행본 제목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4. 인터넷 자료는 제작자, 자료명, 연도, 인터넷 주소, 검색일 순으로 표기한다.

아동문학국제연구학회, 아동문학 저널 리스트, <http://www.irsl.com/journals.html>(2016.12.22.)

제9조(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1.기본 자료, 2. 논문 및 평론, 3. 단행본, 4. 기타’ 순서로 작성한다.
- 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문헌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중국어, 일본어, 기타 동양어 순), 서양어(영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어 순)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동일 언어의 문헌은 저자명의 자모순에 따라 배열한다.
4. 참고문헌은 각주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작성하되, 학회지 논문은 수록된 첫 번째 면과 마지막 면수를 명기하며 단행본의 경우에는 수록 면수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10조(초록)

1. 국문초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국문초록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결론 등으로 구성하되,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다.
 - ② 국문초록은 500자 내외의 2~3개의 단락으로 작성한다.
 - ③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5~7개의 용어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영문초록의 제목은 내용어(content words)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기능어(function words)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② 저자명은 로마자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00-8호) 및 성명 표기 권장안(2013.3.8.)에 따라 성(Surname), 이름(Givnen Name) 순으로 띄어 쓴다.

Kim Noma

- ③ 잡지명, 저작명, 신문명 등은 영문명이 있을 경우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표기의 경우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제시한 후 대괄호[] 안에 영역(英譯)을 병기한다.

『사랑의 선물』: *Sarangue Seonmul* [A Gift of Love]

「바위나리와 아기별」: *Bawonariwa Akibyaol* [The Lily and the Star Child]

- ④ 각종 위원회 및 모임의 표기는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제시한 후 괄호() 안에 영역(英譯)을 병기하되, 고유명사는 번역하지 않는다.

색동회: Saekdonghye(Saekdong Club)

- ⑤ 영문 주제어(Keywords)는 국문 주제어와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유효하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이하 학회)는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출판, 연구 발표 등 제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로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포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3조(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중복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회지의 특집으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중복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저자 표기)

- ① 저자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 ②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 ③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기)

- ①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③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6조(생명윤리)

- ① 연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14)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7조(편집위원의 책무)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8조(심사위원의 책무)

- ①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 ①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피제소자와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의 제보)

- ① 연구 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12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위원회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개시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피제소자에게 소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위원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3조(심사 결과 보고)

-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②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 논문, 부정 행위의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절차, 피제소자의 소명 내용, 판정 결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③ 보고서는 학회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

- ①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소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② 피제소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후속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① 연구자의 학회 회원 제명
- ②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공시
- ④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⑤ 위원회 명의의 견책 통지 발송
- ⑥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 ⑦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6조(재조사 및 명예회복)

- ① 제보자 또는 피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피제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제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 관련 사실의 공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임원 구성

(2019.3.1.-2021.2.28.)

고문	강정규(《시와동화》), 도정일(경희대), 신헌재, 최인학(인하대)	
회장	권혁준(공주교대)	
부회장	조은숙(춘천교대), 배봉기(광주대), 이지호(진주교대)	
감사	김경희(광주교대), 박금숙(진주교대)	
총무 이사	김상한(한국교원대), 김수영(건국대)	
연구 이사	선임이사	이지영(경인교대), 장수경(목원대), 김지은(서울예대)
	동화	박영기(한국외대), 선주원(광주교대), 양윤정(건국대), 염희경(한국방정환재단)
	동시	김유진(인하대), 김제곤(인하대), 진선희(대구교대)
	옛이야기	김명옥(건국대), 김환희(춘천교대)
	그림책	김서정(중앙대), 김세희(성균관대), 엄혜숙(인하대)
	청소년소설	김성진(대구대), 오세란(공주교대)
	비평	김경연(평론가), 이재복(평론가), 최윤정(평론가)
문학교육	한명숙(공주교대), 최은경(인하대), 남지현(인천가원초등학교), 임경순(한국외대)	
출판이사	오현숙(서울대), 권현희(어린이도서연구회), 정진현(건국대), 조태봉(단국대)	
섭외이사	유영진(춘천교대), 장정희(경희대), 최미경(건국대)	
지역 이사	서울	윤동재(고려대)
	경기 인천	김창원(경인교대)
	강원	박정애(강원대)
	충북	김미혜(청주교대)
	충남	김화선(배재대)

	전북	김자연(전주대)
	전남	염창권(광주교대)
	경북	임성규(대구교대)
	경남	심상교(부산교대)
국제 교류 이사	한국	김영순(일본 바이카여대), 유영중(인하대)
	중국	김만석(연변대), 두전하(중국 저장 사범대)
	미국	위종선(위노나 주립대)
	일본	나카무라 오사무(오사카)
편집 위원회	위원장	이향근(서울교대)
	부위원장	김태호(춘천교대)
	위원	원종찬(인하대), 김성진(대구대), 김화선(배재대), 류덕제(대구교대), 최원오(광주교대)
윤리 위원회	위원장	김환희(춘천교대)
	위원	김정란(건국대), 배봉기(광주대), 선안나(성신여대)
간사	총무간사	배재훈(한국교원대)
	편집간사	박용우(서울교대)